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제22조(약관·부속약관 변경)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(최소 1개월이상)하여야 한다.	제22조(약관·부속약관 변경)①----------변경내용(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을 게시----------
1. 법령 개정, 제도 개선, 약관 변경권고(명령)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	(현행과 같음)
2.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	(현행과 같음)
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	(현행과 같음)
4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	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·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---------- 서면·전자우편 ----------(제1항 제1호·제2호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(신·구 대비표 포함) 하여야 하며, 제1항 제3호·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